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6.10.19.(월) 석간
배포
2026.10.16.(금)
담당부서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

책임자

국 장 김은순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최동협 (02-3145-7977)

수 석 황인욱 (02-3145-7975)

선 임 경태수 (02-3145-7761)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주요 내용

◆ 금감원은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

- √ 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사**, **직권 지정 789사** 등 **총 1,193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0사) 대비 소폭 감소(△3.0%)하였습니다.
-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8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4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2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 관리종목 13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직접 **감사인 지정결과**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한 조회방법은 (붙임3) 참고

◆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26.11.12일 본통지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I 개 요

-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제10차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7 사업연도 ①주기적 지정 및 ②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①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 ② (직권 지정)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지정사유 발생 시 감사인을 지정

☞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참고

II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1,193사)

- 금번 제10차 사전통지 대상회사는 총 1,193사(상장 849사*, 비상장 344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0사 [상장 910사, 비상장 320사]) 대비 37사 감소

* 유가증권시장 202사, 코스닥시장 622사, 코넥스시장 25사

- 이 중 474사는 '26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19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지정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26년 제10차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 분	상장(a)			비상장(b)			합계(c=a+b)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 지정(①)	88	296	384	4	16	20	92	312	404
직권 지정(②)	148	317	465	234	90	324	382	407	789
합 계(①+②)	236	613	849	238	106	344	474	719	1,193

2 | 주기적 지정 현황(404사)

- (신규 지정: 92사) 상장사 8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4사 등 92사를 신규 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既 지정된 4사 포함 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 상장사는 92사

- 신규 주기적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별도 기준)는 8,312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3.8조원, 코스닥시장은 1,633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7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8사 등

- (연속 지정: 312사) '24~'25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1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

3 | 직권 지정 현황(789사)

- (신규 지정: 382사)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상장사 148사(유가 28사, 코스닥 96사, 코넥스 24사), 비상장사 234사 등 총 382사

-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22사(신규 직권 지정의 58.1%),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27.7%) 등의 順

- (연속 지정: 407사) 既 지정대상인 총 407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

III 회사 및 지정감사인 유의사항

1 | 회사

- 회사는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공문(감사인 지정명세, 안내문 등 동봉)을 확인하고, 감사인 재지정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① (의견제출)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群) 재지정 요청 등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고

<재지정 요청>

-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群)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
- 특히, 하향 재지정은 일부 지정사유(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限)만 가능하므로 재지정 요청 시 주의 필요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 비상장사 등의 잦은 감사인 교체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도입

*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 등이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2주) 내에** 금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1회 限)**한 경우 회사가 요청한 지정기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

- (적용대상)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

*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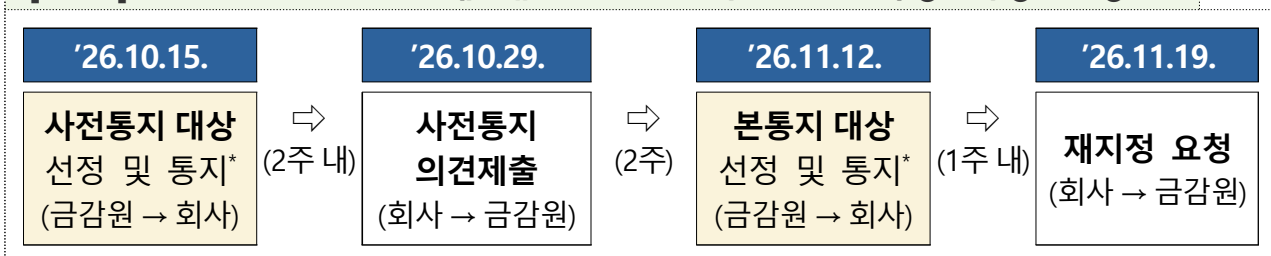
- (행사기한)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2주 이내) 내에만 행사 가능

② (제출방법) 재지정 요청 공문 및 사유서 등을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첨부하여 제출(사전통지 공문의 안내문 참고)

③ (계약체결) 본통지 공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원칙

- 다만,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통해 외부감사 계약 체결 가능
-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한 회사(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기재)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계약서에 회사의 산업 분류와 산업전문가 참여 등 지정감사인과의 협의된 사항을 명시할 필요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7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 선정 이후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2

지정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IV

향후 계획

- 금번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 회사 및 감사인은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등을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참고

-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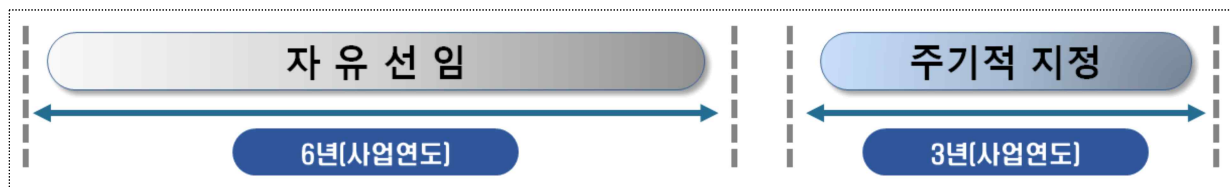
* 재지정 요청 공문 및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제출

-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결과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만, 기한 내(본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워 회사 및 감사인이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금감원은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① **(제도 개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외감법 제11조)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 지정)** 감리결과 조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

구 분	주요 직권 지정사유
외부감사 대상회사	① 상장예정법인, ② 감리결과 조치, ③ 회사 요청, ④ 감사인 미선임, ⑤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감사인선임위원회 미개최, 부실운영 등), ⑥ 회사 귀책사유(감사보수 미지급 등)로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⑦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부감사 법령을 위반한 경우(경미한 위반 제외) ⑧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지정요청, ⑨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상장회사 限	① 관리종목, ② 횡령·배임 발생, ③ 최대주주 변경(과거 3년간 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 교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④ 재무기준 미달(3년 연속 '영업손실 or 負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② 지정시기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주기적 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말 결산법인은 '26.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 지정결과를 익월 중순경 사전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직권 지정)** 원칙적으로 주기적 지정과 동일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과 지정대상 사업연도가 상이
 - * 상장예정법인, 회사 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

③ 감사인 지정방법 (외감규정 별표 3, 4)

-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자산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하고, 그 외에는 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 주기적 지정의 2, 3년차 연속지정 등

$$** \text{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text{주}}}$$

주) 규모별 가중치(자산총액) : ①(10조원 이상) 5배, ②(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4배, ③(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3배, ④(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배, ⑤(5천억원 미만) 1배

<지정방식 예시>

지정대상회사				지정감사인			
회사명	자산규모	지정군	연속지정	감사인	회계법인명	감사인지정점수	지정군
A사	20백억원	다	-		I 법인	100,000 점	가
B사	15백억원	다	-		II 법인	95,000 점	가
C사	12백억원	다	-		III 법인	90,000 점	가
D사	9백억원	라	-		IV 법인	80,000 점	나
E사	8백억원	라	II 법인		V 법인	75,000 점	나
F사	5백억원	라	-		VI 법인	70,000 점	나

 ① 우선지정

 ② 자산순 지정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①, ②, 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 다만,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요청가능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을 재지정요청	라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⑤ 연결 지배·종속회사(모두 지정감사 限)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⑦ 지정 받은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의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금융은 튼튼하게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접수현황'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정현황조회'를 클릭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

기본정보

회사 · 제출서류

감사인 · 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신) 제출현황
[2019.12.16. 이후]

(구) 제출현황
[2019.12.15. 이전]

지정현황조회(회사)

지정현황조회(감사인)

지정유예 결과조회

감사인 지정 현황 조회

1. 감사인 지정 현황

회사명	회사지정군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정사유(기존)	지정사유(신규)
운영서버	마	00000000	1101110991467	3년 영업손실, 3년 부의영업원금유류, 3년 이차보상배출 1미만	-

2. 감사인 지정 분산이월 현황

회사명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분산이월 여부	분산이월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연도			
				시작연도	시작월	종료연도	종료월
회사명1	00000000	1101101101101	해당	2024	01	2024	12
회사명2	00000000	1101101101101	미해당	2025	01	2025	12